

2020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0년 6월 24일(수요일) 14:00 ~ 15:00
- 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2층 대회의실
- 회순
 - 1. 개회 2. 위원장 개회 선언 3. 안건상정 4. 폐회
- 참석자 : 양규혁, 최백렬, 유희철, 박성수, 조재영, 홍철운, 이동현, 이인재, 김중기, 송완상, 이문선, 이원석, 이민규 위원
- 불참자 : 윤영상, 고관호 위원
- 상정안건
 -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간 사 : 바쁘신 가운데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김강욱)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안건은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입니다.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진행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 인사말씀

(양규혁)

위원장 : 오늘 재정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15명 중 총 13명이 참석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의사 정족수에 달했으므로 성원이 되어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 중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학교 측 제안 설명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 배포된 회의 자료에 의거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함.

위원장 : 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대학노조 사무국장 이문선입니다. 오늘 규정개정에 저희 대학회계직원하고 관련 된 내용이 있어서 대학 노조 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학회계직원 근로조건 보장이 대학회계직원의 운용으로 바뀌면서 회계직원의 정원 및 보수를 재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총장이 정한다라는 것이 신설이 되었는데

위 원 : 국립대학 및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이문선) 보수·복무는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위임받은 저
희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이 별도로 만들어져서 17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건 대학회
계직원의 총정원이라고 시행규칙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총정
원이라든가 직급별 정원이나 직무별 정원까지도 대학재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법이나 시행 규칙에서 정한 것보다 거기에 있는 내용보다
더한 것을 내부규정에 삽입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수는 저희가 임단협
을 통해서 대학장이 위촉한 분들하고 저희 대학노조에서 민주노총 산하에 있
는 위임하는 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임단협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정해진 내용
이 재정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만약 반려가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미 학교
측하고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반려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럴
거면 처음부터 학교가 재정위원회하고 임단협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올 수밖
에 없거든요. 또 재정위원회가 수정가결이 가능한 위원회라면 처음에 본부하
고 어느 정도 협상을 하고 위원이 이쪽에 와가지고 수정가결을 원할 수도 있
는 거고 본부 쪽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걸 서로가 서로의 목줄을 쥐는 듯한 이
런 규정이라서 저희는 이런 규정 삽입을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임용·직종·직렬·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은 총
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을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재정회계

// ~~법 회계직원 임용·보수·복무는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라고 이미 되어있어서~~
~~그로 인해서 이미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
~~에 여기에서 별도로 다른 규정에 이행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3항에 있는 것은 기존의 1·2항을 합쳐놓은 내용처럼 보이나~~
~~기존에 있던 1항에는 보수·복무·근로조건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보다 낮아지는 처우를 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으로~~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 이 내용은 법률 부칙에 적시되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
~~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지막항 보면 보수·복무등의 근로조건 개선~~
~~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저희한테는 불리한 지금보다도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닌 더 불리한 조건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대학 노~~
~~조 쪽에서는 12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다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어~~
~~차피 안전이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 분들께서 결정을 해주시겠지만 투~~
~~표를 하실 때 저희 대학노조 의견을 최대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2조는 현행대로 남아있는 것을 더 바라신다는 거
(양규혁)죠? 또 다른 위원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위 원 : 방금 이문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고요. 현재 대학회계직원 현정원이
(송완상) 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게 반
영됐던 사례라든지 알고 싶습니다.

행정주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 인사팀장 장홍수입니다. 관련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장홍수) 학회계직원 정원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이제까지 해 왔고요. 지금 여기 있는 정원은 직종별정원이 아닌 총 정원입니다. 그리고 개정항 제2항에서 임용, 직종, 직렬,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있는 내용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술한 것이 상위법에 위반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 불이익을 금지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같은 내용으로 지금 개정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처우를 할 수 없다라고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개정안이 종전 규정에 비해서 대학회계직원에 대한 처우를 낮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 네 방금 말씀해주신것 가지고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에도 있는 것의 정확한 (이문선) 내용은 총정원에 대해서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4조에 보면 직원의 총정원에 관한 사항은 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다만 정원에 대한 자세한 직종, 직급별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이 이미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2항을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시했다고 하셨는데 법에 있는 내용은 임용, 보수 및 복무라 보수가 총장이 정한다고 분명히 되어있어서 보수를 재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나가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이 보수는 재정위원회에

7) 예산 하는 것은 처음 예결산을 할 때 총임금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 직급별, 호봉부터 해서 수당 이런 것을 임단협에서 체결한 것이 보수인데 그것을 심의·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 하고 다시 임단협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지금 3항에 있는 성별, 국적 신앙, 채용형태 이것도 저희 임단협에 차별금지 조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이미 법률에 제명되어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근로조건 개선을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원래는 이게 강제조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해야 된다라는게 있었는데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는 별도로 분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테는 불합리한 조항이고 또 기존에 있던 법률로 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기 내용에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삽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주사 보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위원회에서 대학회계(장홍수) 직 인건비에 대한 예산 편성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심의는 저희가 인건비 협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인건비이므로 저희가 이 심의를 굳이 보수부분을 넣은 것은 임금협상결과를 반영해서 재정위원회에서도 인건비가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위 원 : 오늘은 주 쟁점이 12조에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조항은 사실 그 동안에 위
(박성수) 원님들께서 재정위원회에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2조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교 자체규정에 총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총장이 기꺼이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총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게 아니다. 총장이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직원은 재정위원회
고유 권한으로 보고 이 재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수정하겠다라고 의사결정
을 내려서 위원회에 안건을 낸 거기 때문에 이것은 총장의 재량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고 재정위원회 법령취지에도 위반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2항을 보시
면 2항은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에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나온 게 되죠. 그래서 2항은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2항은 필
요한 조항입니다. 왜냐하면 대학회계직원과 예산에 관련된 모든 법은 우리 전북
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둬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뿐입니다. 3항을 반대한다면 현재 1항 2항을 그
대로 살려도 됩니다. 이 3항은 왜 이렇게 했는지 처음에는 의아해 했어요. 성별,
국적, 신앙, 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근기법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도 이
렇게 하겠다는 의미인데 12조 3항은 현재 12조 1항, 2항을 그대로 같다 붙여도
됩니다. 12조 1항을 3항으로 현재 12조 2항을 개정 12조 4항으로 그대로 옮기면
은 무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선언적 조항이라 쟁점사항이 아닙니다. 그래

서 1항, 2항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재정위원회에 모든 대학회계에서~~ 나
가는 비용들에 대한 결정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총장이 스스로 기속하자는 의미
이기 때문에 법령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임단협과 관련된 이슈는 있는데 이 임단
협도 늦어도 학교 측과 협상이 끝난 다음에총회를 엽니다. 별도로 구별되는 경
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재정위원회는 학교 측의 내부의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거치는 거지 임단협을 훼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적어도 대학
의 통일적인 의사결정 차원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사용
자 측에 경영상의 절차이기 때문에 노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논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측이 임단협을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되는 거지 임단협 특정
한 절차를 어떻게 하냐 있어서는 노측이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우리 재정위원
회에 올바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 제가 보기에도 현재 개정안에 12조 3항은 현재 규정의 12조 1항, 2항을 섞어 놓은
(양규혁) 것이니까 3항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2항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 규정의 상
위근거법이 없다는 말씀이내요. 그러면 여기에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위원 : 상위법에 있는 내용 자체가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보수, 복무등에 대한 필요한 사
(이문선) 항을 국립대학의 장이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넣다고 해도 여기
에 임용이나 보수까지 포함된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 보수만 별도로 의결로
들어가고 나머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위원장 : 일단 2항부터 이야기 해주시죠.

(양규혁)

위원 : 제2항을 말씀드리면 임용, 직종, 보수, 복무, 징계에 대한 것만 이쪽으로 한다고
(이문선) 정해져 있는데 실제 국립대학회계 설치 법률에도 대학회계직 임용, 보수 및 복무
라고 돼 있거든요. 총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수가
별도로 지금 1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 저희가 보았을 때 이런 근거조항이 없
어서 한다면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이 그 안에 보수
(양규혁) 규정도 들어 있는 건가요?

위원 : 저희 대학회계직원 규정에 보면 제1조 목적이 임용·보수·능률·복무·신분보장·징
(이문선) 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한 규정이 지금 대학회계직원 규정이고요.
2017년도부터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 : 규정화는 되어 있는데 보수는 해마다 변동성이 있는 거잖습니까? 정원변동성이
(박성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의 부칙을 정하거나 할 때 지금 1항과 2항이 기법 상으로
전체적으로 정하거나 하는데 분리규정으로 정하든 한 규정으로 정하든 집행부의
재량적 영역이니까 지금 총장이 정한다라고만 1항에서 되어있지 어떤 형태의 규
정화하는지를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 오해가 있지 않
았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수규정이 따로 있나요?
행정주사 보수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장홍수)

위원 : 총장결재로 회계 별로 보수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박성수)

행정주사 저희가 합의를 한 다음에 보수표를 만듭니다.

(장홍수)

위원 : 그러면 별도로 총장결재를 맞지 않습니까?

(박성수)

행정주사 네

(장홍수)

위원장 : 그럼 보수표는 회계직원 규정에는 안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양규혁)

위원장 : 네

(이문선)

위원장 : 아니 왜 그런 것이냐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우리가 3항하고 2항을 먼저 정해 놓
(양규혁) 고 1항에서 지금 보수가 문제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생각하는 대요. 2항에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을 정하기 위한 근거조항으
로 2항을 만든다면 그 내용에 굳이 임용·직종·직렬·복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위원장 : 예시적인 것이라 굳이 이게 명확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 나둬도
(양규혁) 되고 좀 압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 : 보수에 관한 문제는 재정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라서 그것은 따로 나누는 것이 맞
(이인재)다고 보는데요. 안 그렇다면 재정위원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맞고요. 1항에 보면 총장이 자신의 권한임에도 사실은 재정
위원회의 어떤 식으로든 의결권을 존중해준다는 취지에서 저는 맞다고 보고요. 2
항인 경우에는 대학회계직원 규정으로 이미 있는 사항인데 굳이 있을 필요가 있
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이 제가 처음 봤을 때 애초에 재정위
원회에 권한인지 잘 몰랐거든요. 저는 재정위원회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운영규정에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언
을 시작했으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규정을 바꾸는 것은 목적은 심도 있
고 효율적인 심의 의결기능을 강화하자는 목적인데요. 제 생각은 교수회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운영 규정으로는 기준에 미달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의결과 심의를 위해서 운영 규정을 대폭적으로 수정하거나
논의를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차후에 우
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우선은 12조부터 해결하고요. 12조에서 의견이 다르니까요. 제가 볼 때도 12
(양규혁) 조 2항은 임용·직종·직렬·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것은 예시적인 조항이라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꼭 보수를 넣어야 되나 하는
특히 지금 보수규정은 별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2항까지는 그냥 ~~이~~대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지금 1항에서 정원 및 보수에서 보수에 초점이 가있다는 말
로 이해가 됐는데 맞습니까?

위원 : 정원도 시행규칙에 있는 것처럼 총정원에 관한 사항만을 의결을 말하는 거고요.
(이문선) 이 정원은 직급별정원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대학회계
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여기 있는 정원도 총원하고도 다르다. 그런 말씀이고 보수는 지금 총장하
(양규혁) 고 임단협해가지고 정하는 문제를 재정위원회하고 다시 해야 되나는 문제가 있
다는 말씀이시죠?

위원 : 네 예결산할 때 전해에 먼저 체결이 돼서 올라오는 게 아닌 건 확실한데요. 그러
(이문선) 지 못한 것은 맞는데 이건 먼저 결산을 했을 때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단협 끝나자마자 다시 여기 와가지고 의결을 받아가지
고 그 의결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도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두 번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양규혁)

위원 : 저도 의견을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절차
(김중기) 들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하거든요? 이를테면
개정사유라든가 거기에는 틀림없이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거규정을 마

위 원 : 련해야 한 다라든가 좀 자세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 같고요. 사
(김중기) 실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의결하려고 하면 회계직원규정 같은 것을 참고자료로
가져다 놓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정 사유에 신설하고자 함 이게 개정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대학회계직원들은 소수자들입
니다. 소수자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결정한다는 것
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장 :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지

(양규혁)

위 원 : 그러니까 공부를 하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소수자들과 기
(김중기) 본적인 협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이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 원 : 일단은 완벽한 합의는 어렵고요. 재정위원회의 기본취지는 이제 합의가 되어야
(박성수)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각이 다르고요. 어째 거나 총장이 정하는 사항을 재정위
원회에서 당연히 예산이 포함 된 것이기 때문에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게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은 사실은 준비가 부족했지만 본 심의내용에 핵
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필요하다면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묻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위원회장 :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임단협을 하면은 그냥 그걸로 다른 위원회에

(양규혁) 서 논의를 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요?

행정주사 임단협이 끝나면 총장님 결재를 맡고요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

(장홍수) 다. 그리고 이 보수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정위원회에서 대학회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 인상에 대한 추정치로 대
학회계예산 인건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아니라 실제 인상분을
적용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들어갈거다라는 보수의 의미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
겠습니다. 개인별로 얼마씩 얼마씩 지급한다는 것을 심의·의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상분이 이만큼 결정되었으니 이만큼 지급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 방
법은 임금협상을 당해 연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인건비 편성할 때 이미 그것들이 다 반영 되 가지고 심의·의결을 할 수 있거든
요. 절차에 대한 문제도 개선을 하면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
습니다.

위원회장 : 사실상 세세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문제이니까 또
(양규혁) 괄적으로 인상을 같은 것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 원 : 전반적으로 쟁점은 재정위원회의 권한의 문제입니다. 재정위원회가 대학교 직
(박성수) 원의 보수에 관해서 심의·의결하는 게 적절하나 안하나의 문제가 쟁점입니다.

절차적인 것은 다 해결이 됐는데 근데 지금 저희는 물론 총장이 정하긴 하지
만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당연히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이 수반되는 것이
기 때문에 재정위원회 권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 사실 대학회계 전체가 재정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데 대학회계 직원 (양규혁) 선생님들의 보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만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걸 이중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을 가지는 것 같은데요. 그건 사실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어렵고 저는 지금 12조를 선언적인 조항으로 사실은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보수 문제는 그대로 다 포함되어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이 문제를 예산하고 별도로 따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가요?

위원 : 예산별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아놓은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성수) 전체결정이라는 차원에서 의미도 없고요. 재정위원회 역할에 있어서 큰 의미는 없고 거기는 예산서를 삭감이나 증액 의견을 재정위원회에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입장으로만 생각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재정위원회에서 인상을이 이거밖에 안되느냐 재정여력을 다른 데를 틀어서라도 내년에는 임단협을 거치고 오기 때문에 당해 연도는 안 되겠지만 물론 당해 연도 협상 것보다 더 올려주는 안으로 재협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재정위원회에 권한 내고 이게 임단협의 권한이나 절차를 전혀 해치는 게 아니다. 기본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위원 : 저도 예산의 대학회계에 관한 재정위원회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인재) 이게 신설이 되면 실제로 회계직 직원들의 보수나 인상률이 결정이 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재정위원회에서 먼저 올라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총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재정위원회에 올려지는 겁니까?

위원 // 위원
(박성수) 협상안이 보고가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늦어도 임단협을 하게 되면 대표자들이 저희도 대표자가 구성이 되거든요? 협상대표가 나가고 양측 대표가 만나서 합의를 하면 노조 측은 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총장결재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총장결재 전에 총장이 재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겠다는 절차를 한 번 더 밟는 거죠.

위원 : 협상을 임단협이 총장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대표인 총장하고 그 결과가 재 (이인재) 정위원회에 올라온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 : 확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총장님 (박성수) 이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존중해서 서명을 하게 되고 확정을 하는 겁니다. 임금은 노조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사측의 의사결정의 한 방법이다. 경영권의 문제だ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법률검토도 했고요.

위원장 : 그러니까 협상은 이미 재정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끝난 거죠?

(양규혁)

위원 : 어느 정도 가안을 가지고 재정위원회에 보고합니다.

(박성수)

위원 : 방금 하신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희도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본부 직원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로 주고받았던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방금 그 임단 협이 끝나서 안이 확정이 돼서 저희는 총회를 하고 학교는 최종결정권자에게 다시 픽스를 받는 이런 한 단계씩은 프로세스가 다 있는데 그 중간에 재

위 원 : 정위원회에서 올라와서 의결한다는 것은 부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수정가
(이문선) 결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노조하고 협상을 했던 게 과연 여기에게 수정가결을 하게 된다거나 부결을 됐을 때는 누구랑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올라간 게 그대로 하게 된다면 형식적인 절차인데 형식적인 절차를 위해서 굳이 규정이 삽입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양규혁)

위 원 : 제가 볼 때는 임단협 결과를 비공식적인 거고 재정위원회에서 보수에 관련

(최백렬) 되서 의결해야 최종결정인 것이 아닐까요? 보수에 관련된 것은 꼭 거쳐야 되잖아요.

위원장 : 지금까지 사후적으로 맡았죠.

(양규혁)

위 원 : 그러니까 보수에 대해서 예결산에서 다 거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이문선) 이게 들어가면 예결산 전에 중간에 저희 협상이 이루어 졌을 때 그 건만을 가지고 별도로 의결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교수님들뿐 아니라 직원들 전체가 인건비는 예결산에서 다 정해져야 예산에서는 다 추정치고 마지막 결산에서 실제 지급된 걸로 해서 결산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거 정해지면 대학회계직원만 별도로 임단협 체결된 이후에 그 협상안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그

거에 대해서 그게 부당하지 않으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제 생각에도 재정위원회의 전문성에 복합적인 구성이라 여기에서 그런 이해

(양규혁) 관계가 서로 상반될 수 있는 문제를 의결하는 것이 맞나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대학회계가 재정위원회 해야 될 사항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세부적으로 따지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봐서

거의 머 우리 예산심의 하듯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위 원 :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안 3안을 현재

(박성수) 12조 1항, 2항을 3항, 4항으로 배치해서 현재 12조 1항, 2항을 3항, 4항으로 개정안에 살려놓고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하고 현재 개정안 1항, 2항은 제안한대로 수정안으로 가부를 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우리 이문선 위원님께서는 개정안의 12조 1항을 보수만 빼자는 말씀

(양규혁) 인가요? 아니면 1항 전체를 빼자는 말씀인가요?

위 원 : 저희 입장에서는 1항은 제외하고요. 2항에 세부적으로 있는 것에 보수를 포

(이문선) 함하고요.

위원장 : 보수를 포함하고요? 임용, 보수, 직종 이렇게?

(양규혁)

위 원 : 그리고 3항은 아까 말했듯이 기준에 있던 그래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문선)

위원장 : 그러면 두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까요?

(양규혁)

위원들 : 네

위원장 : 잠시 성안을 하자면 현재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은 먼저
(양규혁) 현재 개정안에 수정안은 12조 1항, 2항을 그대로 두고 개정안의 1항, 2항을 3항, 4항
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거꾸로 해도 되요? 그러니까 현재 규정에 1항, 2항을 3항, 4항
으로? 수정안 1은 현재 규정에 1항, 2항을 개정안의 3항, 4항으로 그니까 개정안
의 1항, 2항은 그대로 있고 3항, 4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안 2는 이문선 위
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현재 규정의 1항, 2항을 놓아두고 개정안의 2항을 아니면 개
정안에서 1항만 삭제를 하고 2항에서 임용 다음에 보수를 넣는 걸로 할까요?

위 원 : 네 1항은 삭제하고요. 2항에 보수를 추가하고 3항은 기존에 1항, 2항으로 하
(이문선) 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기존에 1항, 2항으로? 그러면 성격상 근거조항을 1항으로 놓기에는 그러니까
(양규혁) 근거조항을 3항으로 하시죠. 수정 2안은 규정 12조 1항, 2항을 현행대로 하
고 개정안의 2항을 임용 다음에 보수를 포함해서 3항으로 12조 3항으로 하
는 것입니다.

위 원 : 여쭤볼게요. 수정안 2안에 대해서요. 1항이 없어지고 보수를 2항에 집어넣겠
(이동현) 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보수를 전북대학교 대학회계규정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하면 재정위원회에서는 보수에 관해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야
기이잖아요? 그런데 대학회계에 관한 모든 재정에 관한 것은 재정위원회에
권한이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아무 문제점도 없나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 원 : 대학회계직원 규정 제1조 목적예요.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의
(이문선) 임용, 보수, 능률, 복무, 신분보장, 징계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미 보수가 포함되어서 이미 운용 중에 있습니다.

위 원 : 그렇게 된다면 결국 재정위원회에서는 그 보수에 관해서 전혀 권한이 없게
(이동현)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혹시 전북대학교 대학회계규정에 재정위원회의 역할
이 들어있습니까? 어느 항목이라도?

위 원 : 대학회계직원 규정에 재정위원회가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정원밖에 없습
(이문선) 니다.

위원장 : 그러니까 여기서 보수가 더 확장하는 개념은 아니고 현행 나열규정이라 회
(양규혁) 계직원규정 내에서 보수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수정 1안은 사무국장님
이 제안설명하신거고 수정 2안은 이문선 위원님이 제안 설명하신 그 안으
로 해가지고 되게 이런 경우에는 거수로 하죠? 그리고 지금 12조 이 앞에
있는 조항인 신설되는 제7조의 2는 그냥 수정 없이 그대로 가도 되는 거죠?
이 전체에 대한 표결입니다.

위 원 : 전체에 관한 표결이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제7조의 2의 6항 심의·의결
(이인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한 규정이 있는데요. 심의·의결
외에 다른 목적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라서요. 그러면 모든 자료
가 재정위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뜻인가요?

위 원 : 재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위한 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홍철운)죠.

위 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위원회 의결 사항이나 회의자료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 (이인재)명한 공개를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심의·의결외에라면 학내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얘기 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조차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 사실 이런 것은 선언적인 조항이라 그 사항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죠. (양규혁)

위 원 : 근데 이런 것을 왜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요. (이인재)

위 원 : 저도 의견을 한마디 내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서 결정 (김중기)을 해버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재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상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게 아니면 우리가 형식적인 절차라든가 그런 틀에서 변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런 규정보다 재정위원회에 다른 규정을 고쳐야 될 규정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틀림없이 여기에서 이대로 표결을 하게 되면 숫자에 놀려서 그런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숫자로 하는 것인데요. 제가 재정위원회에 와서 운영하는데 절차나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이거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 결국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대등함을 한다고 하면 아예 그런 경우까지 전체적으로 협의 내지 논의를 통해서 가야되거나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여러 대학의 사무를 보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지 않았습니까?

위 원 : 지금 의미하는 것은 7조 관련입니까? 아니면 12조 관련입니까? (박성수)

위 원 :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중기)

위 원 : 너무 막연하신 것 같고요. 의사절차에 대해서는 7조의2에서 지금 많이 반영 (박성수)을 했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다른 대학의 사례가 있으면 추후 개정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개정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양규혁)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추후에 개정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재정위원회가 이 운영규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하게 제안을 하시면은 모두 합의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위 원 : 절차적인 문제는 말씀드리면 이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학무회의 심의까지 (박성수) 다 거쳤습니다.

위 원 :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올라온 안건은 지금 오늘이 안이잖아요? 제7조
(최백렬) 의2하고 제12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찬반 두 안이 1안, 2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추후에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회의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 올라오지 않은 내용을 오늘 회의에서 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 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번 사안들에 대해서 평소에 논의하거나 이야기
(김중기)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되죠. 그렇지만 다른 대학들은 소위원회를 두어서 그런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며 저도 1년 동안 여기 와서 들러리서려 여기 온 건지 생각이 들어서 열어 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 원 : 오늘 안이 통과하고 기타 토의사항으로 소위원회를 만들자라는 안을 내주시면 좋겠
(최백렬) 습니다.

위 원 : 오늘 표결해야 될 안도 이대로 해버리면 이대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
(김중기) 씀드리는 거예요.

위 원 : 개정안을 다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수정 보완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홍철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 원 : 제가 몇 번의 회의를 참석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 하지 않으
(김중기) 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 원 : 개정사항이 있으면 김중기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안건을 올리시면 되거든요.
(홍철운)

위 원 : 저는 오늘 안을 표결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중기)

위원장 : 그럼 시간이 없으니까 거수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중기
(양규혁) 교수님 안은 오늘 표결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신데 그냥 찬성하시는 분이 과반수가 넘으면 그냥 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김중기 교수님 안에 오늘 표결을 안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로 표시해주시죠. 그럼 2분이기 때문에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인재 교수님 안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선언적인 것이라 여기서 이것을 다시 논의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 원 : 논의한 다기보다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요. 왜냐하면 저도 보기
(이인재)에 이게 선언적인 그런 조항인데 선언적이 조항이 굳이 있을 필요가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 대개 의미가 비밀 유지 의무는 위원회에 주어진 것이라 그런 의미라 이런
(양규혁)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위 원 : 재정위원회에서 비밀적인 사안을 다루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록도 공
(이인재)개하도록 되어있고 자료들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 원 : 오픈하나 오픈하지 않으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얼마만큼 엄중하나 엄중하
(홍철운) 지 않느냐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위 원 : 왜냐면 우리가 무엇을 다를 때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는 위원회 내에서 논
(이인재) 의를 통해서 이것은 비밀로 하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식
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 원 : 그러면 수정안 1안의 7조의 2 6항을 삭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양규혁)

위 원 : 7항은 6항으로 8항은 7항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장 : 그러면 수정안 1, 2에 다 그렇게 들어가도 되겠네요. 수정안 1, 2에 6항을 삭
(양규혁) 제하고 7항을 6항으로 8항을 7항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
수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 1안에 찬성
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분입니다. 수정안 2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분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 1
안이 7분, 수정 2안이 3표, 기권 2표로 수정 1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1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기타 토의사항 혹시 짧게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을
(양규혁) 해주시죠.

위 원 : 제가 짧게 있습니다. 지난 회의록에 보면 총무과에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
(이인재) 나 교수인 경우에 연구비 신청을 할 때 급여공제 동의서를 쓰는 것이 적법
하고 판례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당시에 노동법 전공하시는 교수
님 자문을 들어서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판례를 찾
게 되었는데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디 읽어보시면 물론 여기에 임금의 2
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금액에 관하여 허용된 다라고는 있으나 그 전제
조건이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등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부당 이득 반환
자동 채권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연구비인 경우에 동의서를
써서 급여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이 됩니다. 그러나 당시에 회의 때는 자료가 잘못된 자료가 우리 회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자
료의 출처와 조사하신 분이라든가 어떤 경위로 해서 그런 내용이 회의 안건
을 결정하는데 요소가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당시에
발언하셨던 분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 그때 참석했던 분이 참석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담당 부서에서
(양규혁) 와가지고 하지 않았나요?

위 원 : 기획처부처장님하고 처장님하고 총무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인재)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회의록을 봤는데요. 총무과에서 그런 자료가 조사되었
다고 하시고 그 분을 레퍼런스로 삼으셨거든요.

위원장 : 변호사하고 상의를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양규혁)

위원 : 총무과에서 파일을 살펴보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인재) 결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찾아보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정에 이런 잘못된 정보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재발하면 안되겠고요. 그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인가를 무엇이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결정이거든요. 중요한 결정을 뚜렷한 근거 없이 이것을 정한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 먼저 그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잘못되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 (홍철운) 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저는 그 절차가 일단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만 그래도 전체가 한 번 동의를 얻는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판단과 그 결정을 내린 이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위원장님에게 이 카피 본을 한부씩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인재) 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위원 :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시고 법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전문가를 (홍철운) 모셔서 함께 다시 논의를 해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아니 당시에도 제가 노동법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을 자문을 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 (이인재) 테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판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2분의 1에 대해서는 금액을 차 압을 할 수 있다. 급여 공제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있 어요. 그렇지만 실제 판결 내용을 호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의도적으로

위 원 :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철운) 그 판례가 이 사안과 맞는 건지 어떤 건지부터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차압 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서 쓰라는 용어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어떤 선입대상 이 있었을 때 차압이거나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갚지 않는 경우에는 차압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여기에서는 차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그 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가 여기 상황에 잘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판단부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이 정당하게 맞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렇게 하시죠. 그 문제는 지금 여기 담당하는 당사자가 안계시기 때문 (양규혁) 에 다음 회의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그때 기획처 담당자가 그렇게 말을 한 걸로 알고 제 기억에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다고 들었으니까 사실 항상 변호사가 양쪽의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의견이 다르니까 이것은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판사가 판결하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 잘못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쪽이 맞다고 보기도 어려운 문제 이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기획처 담당자를 참석시켜서 듣는 걸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시죠. 지금 여기서 당사자가 없는데 우리끼리 얘기해 봐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 원 : 알겠습니다. 이 판례를 보시면 자명합니다. 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아도 이건 한국말 (이인재) 만 안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여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초과지급한 잘 못되어서 초과지급한 임금에 대해서 2분의 1까지 판례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지급한 돈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위원장 : 간사께서 기획처 그 당시 담당자에게 그에 대한 준비를 해가지고 참석해주시라고 (양규혁) 다음 회의 때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기타 사항 협의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 (양규혁) 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회의록 서명을 출석 위원 전원이 하여야 하나 단서조항에서 출석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회의록에 대표로 간(間)서명할 수 있기에 대표자 3인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회계연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간서명은 윤영상, 김중기, 송완상 위원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간(間)서명하실 대표 위원 3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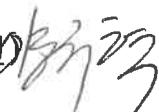
위원들 : 유희철, 이인재, 이문선 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그러면 간(間)서명하실 대표위원으로 유희철 위원님, 이인재 위원님, 이문선 (양규혁) 위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양규혁)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 사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제3회 전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 (김강욱) 습니다.

작성일 : 2020. 7. 3.(금)

위 원 장 : 양 규 혁 (인) 

간 사 : 김 강 욱 

기 록 자 : 김 선 응 

전북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원안 및 수정안 비교표

원 안	수 정 안
<p>제7조의2(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4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이 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정기회), 회기 및 운영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p> <p>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p>⑥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⑦ 재정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내용을</p>	<p>제7조의2(재정위원회의 운영) ① 재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재정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 제4조제2항의 위원 순으로 소집한다.</p> <p>②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법 제8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p> <p>③ 위원장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세출안이 재정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위원회를 소집하여 개최하고(정기회), 회기 및 운영은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정한다.</p> <p>④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 위원장은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 회의 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삭제)</p> <p>⑤ 재정위원회 위원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p> <p>⑥ 재정위원회 위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재정위원회 심의·의결 관련 내용을</p>

<p>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⑧ 제7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항이나 기타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질의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p> <p>⑦ 제6항의 조치를 요구받은 부서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준하는 사항이나 기타 공개가 부적합하다고 총장이 인정한 사항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2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보수는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p>	<p>제12조(대학회계직원의 운용 등) ①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및 보수는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삭제)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②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직종, 직렬,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대학회계직원의 임용, 직종, 직렬, 복무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대학회계직원 규정」으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p>
<p>③ 대학은 대학회계직원의 성별, 국적, 신앙, 채용형태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보수(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에 관한 사항 제외), 복무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④ 대학은 대학회계직원의 성별, 국적, 신앙, 채용형태 등의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보수(종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던 급여보조성 경비에 관한 사항 제외), 복무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